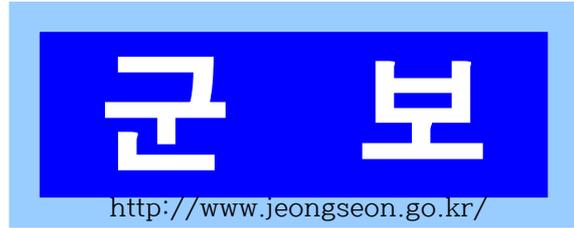


아리아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16호 2017. 4. 17. (월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567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
- 정선군 조례 제2568호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12
- 정선군 조례 제2569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5
- 정선군 조례 제2570호 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
- 정선군 조례 제2571호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조 례

제236회 정선군의회(2017. 3. 30.)에서 의결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4월 1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567호

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위원회 운영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위원회”란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, 협의회, 자문단, 심의회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.
2. “위촉직 위원”이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당연직 외의 사람을, “당연직 위원”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3. “총괄부서장”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.
4. “담당부서장”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5. “용역·공사”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·조사, 계획수립, 설계·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 등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
2.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
3.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

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2장 설치 및 구성

제4조(설치요건)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·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긴급하거나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절차) ① 담당부서장이 소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·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또는 변경목적
2. 위원정수·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 명부
3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
4. 회의 소집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1.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
2. 다른 위원회와 성격·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
3.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

제6조(구성방법)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한 경우
2.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
3.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·자격·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담당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주사로 한다.

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장 위원의 임기·위촉해제 등

제8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9조(제척·회피 등) 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,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촉해제)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

2. 장기입원,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

4. 비위사실,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

5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하여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,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11조(수의계약과 사임)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·공사 등에 수

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제4장 회의 운영 등

제12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,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전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일시 및 장소
2.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
3.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
4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공개원칙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개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
2.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제14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,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「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.

제5장 보칙

제16조(사후관리) 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총괄 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.

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집행내역, 심의·의결 실적 등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에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남은 임기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정선군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- 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⑦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5항 중 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⑧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7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⑨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⑩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⑪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⑫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2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⑭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⑮ 정선군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⑯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8조제1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- ⑰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5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

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⑱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⑲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⑳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㉑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㉒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㉓ 정선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㉔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㉕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㉖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㉗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㉘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㉙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

치 및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⑩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⑪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⑫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⑬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⑭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⑮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⑯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4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⑰ 정선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등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⑱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4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⑲ 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⑳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㉑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②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③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④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⑥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⑦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⑧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⑨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⑩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⑪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⑫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⑬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4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5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6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7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9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0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1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2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3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4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

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5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6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7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8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⑥9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⑦0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개 정 이 유

-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·합리성을 제고하고,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(안 제4조, 제5조)
 - 기능 중복,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노력
 -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신설·변경 시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
- 위촉직 위원 선임기준(안 제6조)
 - 전문성과 성별균형 고려, 동일인에 대한 위촉범위 및 연임 제한 등
- 위원회 사후관리(안 제16조)
 -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여부 검토 등
- 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 폐지(안 부칙 제2조)

제236회 정선군의회(2017. 3. 30.)에서 의결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4월 1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568호

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

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군의 기본계획 또는 주요 정책에 관한 조정·심의 및 자문·연구 등에 따라 군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·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국·도정 관련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
- 3.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등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
- 4. 그 밖에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당연직 위원은 각 실·과·단·소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,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,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 등의 제·개정)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정하고자 다른 조례 등을 제·개정하려는 경우, 그 내용을 미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획감사실장은 소관부서별 해당 위원회의 성격이나 근거법령의 위임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거나,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(可否同數)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및 연구·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이를 확인·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긴급한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,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의안제출 등)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 위촉직 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하고, 그 명단을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각 의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, 그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자료제출 등 협조)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실비지급)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거나 심의 중인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개 정 이 유

○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구성, 회의운영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, 의사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과 군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 특례(안 제3조)
 - 당연직 위원 구성 원칙(각 실·과·단·소장)
 - 특정안건 심의 시 7명 이내에서 위촉직 위원 선임 가능
 -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
- 다른 조례 등 제·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(안 제5조)
 - 부서별 소관 위원회 처리사항의 위임규정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
- 위원회 심의기능 보완(안 제6조, 제10조)
 - 의안심의에 필요한 연구·조사 시행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

제236회 정선군의회(2017. 3. 30.)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4월 17일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569호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” 를 “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11.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·운영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개인 또는 단체” 를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개인 또는 단체” 로 한다.

②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단체” 를 “단체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” 으로 한다.

③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 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 으로 한다.

④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 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 으로 한다.

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개인 또는 단체” 를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개인 또는 단체” 로 한다.

⑥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으로 한다.

⑦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법인·단체 등”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등”으로 한다.

⑧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으로 한다.

⑨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다른 기관·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”을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다른 기관·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”으로 한다.

⑩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개인, 법인 또는 단체”를 “정선군시설관리공단, 개인, 법인 또는 단체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</u></p> <p>제17조(사업)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~ 6의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·8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u>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7조(사업) ①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의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11.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·운영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개 정 이 유

-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,
- 읍면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에 따라 제명을 “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 로 함
-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 “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·운영” 을 추가함(안 제 17조)
-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부칙 제2조)

제236회 정선군의회(2017. 3. 30.)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4월 1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570호

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1 년 12월 31일
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기금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----- ----- -----.</p>

개 정 이 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의 개정(2015. 7.24.)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일몰제(5년 설정) 도입을 의무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(안 제3조)

제236회 정선군의회(2017. 3. 30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4월 1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571호

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등)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·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
- 2.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
- 3.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등) ① <u>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·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농업축산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</u></p> <p>가. <u>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</u></p> <p>나. <u>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명</u></p> <p>다. <u>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</u></p> <p>라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</u>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(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등) ① <u>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·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<u>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</u></p> <p>2. <u>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</u></p> <p>3. <u>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
- 2.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
- 3.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삭 제>

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
- 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
- 3.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

<삭 제>

제10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삭 제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개 정 이 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운영을 정선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(안 제7조)